

# 마이데이터 개념과 추진 현황

박주석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마이데이터코리아허브 대표

## 1. 머리말: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하였다!

지난 30년 동안 데이터 경제를 주도했던 조직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가 최근 개인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로 전환되고 있다. 다보스포럼에서는 개인데이터를 21세기 사회의 모든 분야를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적 자원이라고 예측하였다.

미국에서는 스마트공시 정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마이데이터 사례가 나타났다. 유럽에서는 마이데이터 정책을 통해서 오픈뱅킹이 시도되었고 새롭게 제정된 GDPR 법안에 마이데이터 규정이 포함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3법이 개정되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작되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새로운 신용정보 생태계를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선정하고 올해 2022년 다양한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화됨으로써 일반인들도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했음을 느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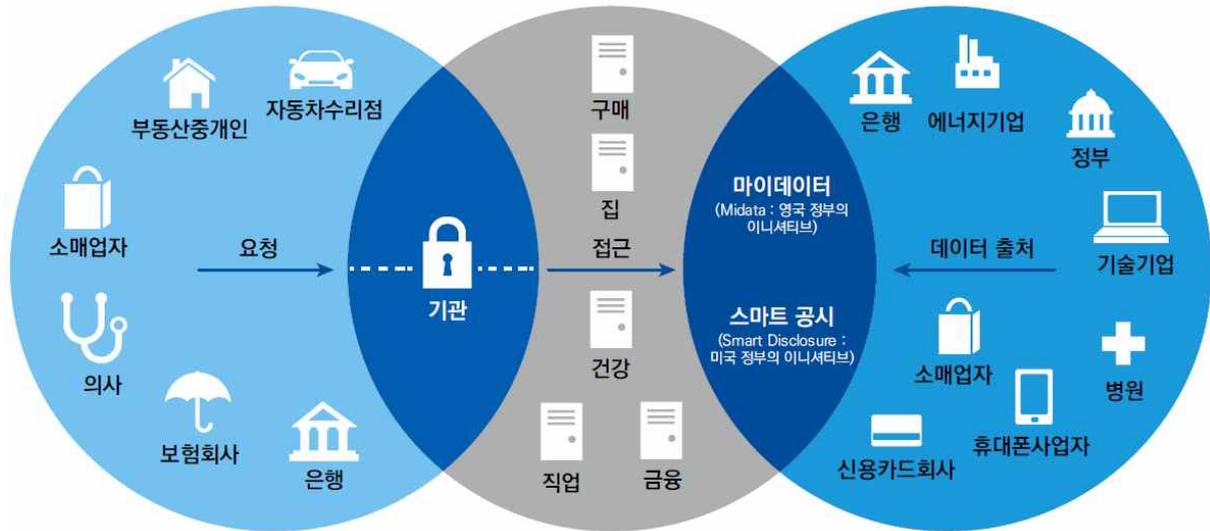
## 2. 개인데이터 생태계의 역사

1990년대 들어 퍼스널컴퓨터가 일반화되면서 개인정보관리소프트웨어(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oftware)가 나타났다. 하지만 PIMS는 개인 데이터 생태계를 관리하기보다는 일정, 명함, 주소, 메모 등 개인의 컴퓨터 자료를 관리하였다. 반면 개인 재무관리 소프트웨어(PFMS, 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Software)는 은행, 카드 등 금융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수집하여 개인 금융 데이터 생태계를 관리하였다. 2000년대에 PFMS는 미국에서 이미 보편화되었다.

2011년부터 다보스포럼에서는 개인데이터 관련 보고서를 4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개인데이터를 21세기 사회의 모든 분야를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적 자원이라고 예측하였다. 특히 2013년 보고서에는 개인 데이터 생태계를 보여주는 3개의 원을 제시하였다.

[그림 1]의 첫 번째 원은 데이터 출처 및 수집을 보여준다. 사실 개인 데이터는 자신이 갖고 있기 보다는 기업 또는 기관이 갖고 있다. 개인은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 또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원은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보여준다. 기업 또는 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자신의 관점에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원은 데이터 요청 및 서비스를 보여준다. 제3의 기업 또는 기관에 자신의 데이터를 보내서 더 좋은 데이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리하면 두 번째 원은 데이터 열람권을

의미하고 세 번째 원은 데이터 이동권(또는 데이터 전송권)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인데이터 생태계를 촉진한 정책은 미국의 스마트 공시(Smart Disclosure) 정책과 영국의 마이데이터(Midata) 정책이었다.



※자료: Unlocking the Value of Personal Data: From Collection to Usage, WEF Report 2013

[그림 1] 개인 데이터 생태계

미국의 스마트공시 정책은 소비자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었다. 즉, 스마트공시 정책은 개인의 데이터 주권보다는 소비자 주권을 위해서 나온 정책이었다. 베스트셀러 책 'Nudge'에서 소개된 RECAP(Record, Evaluation, and Compare Alternative Prices)의 영향을 받아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이었다. 제품, 서비스 및 업체에 대한 데이터는 공개적으로 제공되고, 개인 데이터는 데이터 주체인 개인이 선택한 대상에게만 안전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스마트공시의 세부 정책으로 의료 분야의 블루버튼, 에너지 분야의 그린버튼, 교육 분야의 마이스튜던트버튼 등이 제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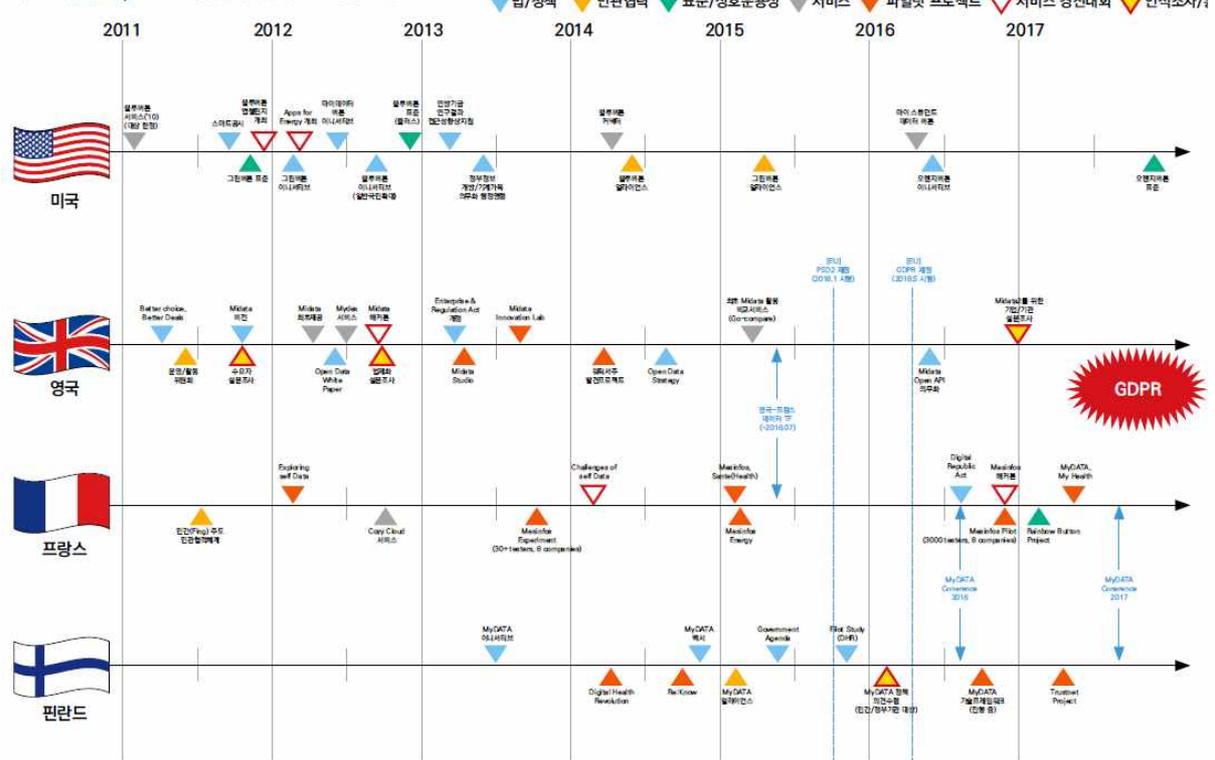
유럽에서는 영국이 주도하여 마이데이터 정책을 펼쳤다. 영국의 마이데이터(Midata) 정책은 'Better Choice, Better Deals'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소비자에게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마이덱스(Mydex)라는 개인데이터 서비스 사업자가 나타났다. 그 후에 유럽의 각 국가들이 다양한 마이데이터 정책을 펼쳤었다. 그중에서 핀란드는 마이데이터 사상의 기초가 된 마이데이터 백서를 발간하였고 마이데이터전문물을 보급하였다.

2018년에는 마이데이터 사상을 연구하는 마이데이터글로벌(MyData Global)이라는 국제 조직이 탄생하였다. [그림 2]는 해외 마이데이터의 역사를 보여준다.

마이데이터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제도는 유럽연합(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법안이다. GDPR 법안은 2018년 시행되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의 데이터 제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 법안은 유럽의 국가별 데이터보호 제도를 하나로 일치시키면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제도이다. 따라서 데이터보호 법안이지만 마이데이터 사상을 반영하였

다. 즉,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강조하여 데이터 열람권, 데이터 이동권, 데이터 삭제권 등을 포함하였다.

주요 국가 MyDATA 정책 추진 주요 마일스톤



※자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연구보고서 2017

[그림 2] 해외 마이데이터의 역사

### 3. 마이데이터 개념

일반적으로 개인데이터(personal data)와 마이데이터(MyData)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마이데이터글로벌(MyData Global)은 마이데이터를 개인데이터와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단순히 데이터(data)를 넘어서 서비스(service)를 의미하고, 더 나아가 개인 권리(right)로서 사상(thought) 또는 운동(movement)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개인데이터는 일반명사이고 마이데이터는 고유명사라고 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의 주체인 개인이 '나의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업이나 기관이 갖고 있는 나의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이른바 '자기 결정권'을 부여하여 개인 데이터생태계를 만들게 하는 것이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데이터 소유권 관점보다는 데이터 사용권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개인은 데이터 관리 체계나 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기업이나 기관이 갖고 있는 나의 데이터를 획득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웠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개인을 대신해서 개인의 권한을 위임 받아 데이터를 접근, 수집하고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사업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업자를 글로벌 조직인 마이데이터글로벌에서는 '마이데이터 오퍼레

이터(Operator)'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라고 부른다. [그림 3]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예시를 보여준다.



※자료: 행정안전부 2021

[그림 3] 마이데이터 예시

마이데이터 사상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이데이터글로벌이 제정한 마이데이터 원칙 선언문(Declaration of MyData Principles)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마이데이터 원칙 선언문은 3가지 변화 목표와 6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3가지 변화 목표는 마이데이터 사상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상의 첫 번째 변화 목표는 개인의 형식적인 권리를 실행 가능한 권리로 바꾸어 주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개인은 법적인 정보보호 권리를 누려왔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관행에 가려 거의 형식적으로 유지되었고 개인의 데이터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한 투명성과 정확한 이해에 기반을 둔 동의가 개인과 조직에 의해 소통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개인에게 '원 클릭 권리'로 구현되어야 한다.

두 번째 변화 목표는 데이터 보호 제도를 넘어서 데이터 권한 강화 제도로 바꾸는 것이다. 과거 법과 정책은 조직이 개인 데이터를 오남용하는 것을 막고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개인 보호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개인의 데이터 활용도 중요하다. 즉, 조직이 보유한 개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의 권한 강화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한 강화 체계는 기업에게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줄 수 있다.

세 번째 변화 목표는 폐쇄형 생태계에서 개방형 생태계로 바꾸는 것이다. 최근의 데이터경제는 몇 개의 거대한 플랫폼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거대한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을 잠식하여 대다수 기업들이 고객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있다. 마이데이터글로벌의 목표는 개인들이 자신의 데이터에 발생하는 상황을 통제하게 함으로써, 개인들이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은 결국 디지털경제에서의 균형, 공정성, 다양성, 경쟁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 4. 우리나라 마이데이터 정책 현황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데이터 활용 제도보다는 데이터 보호 제도에 집중하였다.

2013년 공공데이터법이 시행되면서 데이터 활용이 촉진되었지만 공공 분야에 한정되었다. 본격적인 데이터 활용 제도가 추진된 것은 데이터 3법 개정이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법을 의미하며, 2018년 11월 발의되었지만,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거쳐서 2020년 1월이 되어서야 개정되었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데이터 3법 개정안

법령	개정 방향성	주요 개정 내용
신용정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li> <li>- 데이터 신사업 육성</li> <li>- 개인정보 보호 강화</li> <li>- 거버넌스 체계 일원화</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신설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li> <li>2.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마이데이터 산업)의 신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본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산업</li> <li>-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대리행사, 투자일임/투자자문,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등 부수업무, 경영업무 허용</li> </ul> </li> <li>3.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신용정보로서 가명정보 개념 도입</li> <li>- 가명정보는 신용주체의 동의 없이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 이용 또는 제공 허용</li> </ul> </li> <li>4. 개인 신용정보 전송요구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이나 본인 신용정보 관리회사, 다른 금융기관 등에게 본인의 신용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li> </ul> </li> <li>5. 신용정보업(신용조회업무)을 세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으로 구분</li> </ul> </li> </ol>
개인정보 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보호 강화</li> <li>- 데이터 신사업 육성</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명확화</li> <li>-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활용 가능</li> </ul> </li> <li>2. 개인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법집행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li> </ol>
정보통신망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버넌스 체계 일원화</li> <li>- 유사/중복 조항 일원화</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의 ‘개인정보보호법’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삭제 후 ‘개인 정보보호법’으로 이관</li> </ul> </li> </ol>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개정된 데이터 3법 중 실제로 마이데이터 제도가 포함된 것은 신용정보법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은 국내 금융사 및 데이터 산업계에 확실한 영향을 주었다. 데이터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개인금융데이터(일명 신용정보) 생태계를 구현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사업(일명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부터 신용정보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2022년 1월 금융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서비스 유형으로는 신용정보 통합조회, 재무현황 분석, 신용 관리·정보관리, 금융상품 정보제공·추천 등이 있다. 이 사업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추진한 대규모 데이터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구나 데이터 열람권을 넘어서 데이터 이동권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금융보안원 자료에 의하면

2022년 5월 기준으로 56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선정되어 48개 서비스가 운영 중이며, 서비스 가입자 수는 누적 3,025만명, 정보 전송 건수는 누적 368.8억건 이라고 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질을 떠나서 양적으로는 분명한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다른 정부 부처도 마이데이터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부터 마이데이터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민간 병원을 중심으로 마이헬스웨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마이데이터 정책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각 부처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업별 마이데이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산업에 상관없이 개인 맞춤형 융합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관점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다 하겠다.

## 5. 맺음말: 우리나라가 세계 마이데이터를 선도할 수 있다.

2011년 IDC 보고서에 의하면 디지털데이터 중개인데이터 비중은 약 75%이며,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개인데이터의 비중과 가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인터넷 기업은 개인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하여 지금은 글로벌 시가총액 TOP 5 기업이 되었다.

해외 마이데이터 정책이 나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우리나라는 마이데이터 정책을 늦게 시작했지만, 세계가 우리나라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가 주도하여 데이터 이동권 중심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대규모로 실행했기 때문이다.

최근에 웹3.0 기술이 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다. 웹3.0의 탈중앙화 개념은 누구에게도 통제 받지 않고 중개자가 없는, 말 그대로 중앙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한다. 데이터 관점에서 탈중앙화는 조직의 데이터 생태계를 개인의 데이터 생태계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즉, 그동안 블록체인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체계가 구현되었다면, 이제는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주권을 구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면, 세계 데이터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 본 연구의 일부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과제임 (NRF-2020S1A5B8103855).

### [참고문헌]

- [1] 금융위원회 (2018),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 [2] 금융위원회 (2020), 데이터 경제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 [3] 권영준 (2016),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동의 제도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36(1), 673-734
- [4] 김태오 (2018), 데이터 주도 혁신 시대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정법연구, 55, 29-56
- [5] 마이데이터 글로벌. (2017), 마이데이터 선언문
- [6] 마이데이터 글로벌 (2020), 마이데이터 백서 - 인간 중심적인 개인데이터 이용 (3판)

- [7] 박주석 (2018), 빅데이터, 오픈데이터, 마이데이터의 비교 연구, 한국빅데이터학회논문지, 제 3권, 제1호, pp.41
- [8] 박주석 (2020), 마이데이터, 새로운 기회가 온다, 중소기업 CEO 리포트, IBK 은행
- [9] 박주석 (2020), 마이데이터 사상과 그 의미, 전자신문
- [10] 박주석 (2020), 우리나라가 마이데이터를 선도하려면, 전자신문
- [11] 박주석, 김혜영, 김한성, 최민령 (2021), “4가지 관점의 마이데이터 융합서비스 활성화 전략: 유럽과 한국을 비교하여”, 한국빅데이터 학회논문지, 제6권, 제2호, pp.182
- [12] 박주석 (2021), 마이데이터 사업이 활성화 되려면, 전자신문
- [13] 박주석 (2022), 유럽 마이데이터 사례 벤치마킹, 전자신문
- [14] 박주석 (2022), 웹3.0과 마이데이터, 전자신문
- [15]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0). 2020 마이데이터 현황 및 수요조사
- [16]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0) 마이데이터 융합서비스 활성화 전략, 데이터산업포럼 보고서

※ 출처: TTA 저널 제204호